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Study on the Realities in Seoul Subway Crimes: Criminal Psychology

임상곤*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III. 범죄발생 원인론의 접근
- IV.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V. 결론
 - * 참고문헌
 - * ABSTRACT

I. 서 론

21C 고도 선진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가 급속하게 다양화·다변화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성의 황폐화·황금만능·한탕주의사조의 팽배는 어떻게 보면 필연의 귀결이었는지도 모르며, 범죄 또한 이에 편승하여 날로 광역화·홍포화·지능화·기동화의 추세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하며,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범죄의 실태 파악 및 그 원인의 사회·문화적 연구는 실로 중요하다고 보겠다.

최근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교통수단의 중요한 축인 지하철이 고도로 발달하여 국민의 편익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하철은 그 특성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범죄자 입장에서는 좋은 표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지하철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조직화·기동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범죄는 사회와 특정한 시대의 산물이라는 전제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의 실태

* 중부대학교 안전경호공안학부 공안경호학과 교수.

와 발생원인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지하철의 범죄분석을 범죄심리학 측면에서 규명하려고 한다.

범죄의 발생원인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서울 지하철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정한 대책수립 및 효율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II.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범죄 발생원인을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론을 고찰하고,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울지하철 범죄의 연도별 검거 실적과 지하철 범죄 분석(1995. 1-1997.12)을 통해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범죄발생원인론의 접근은 생리학적과 심리학적 범죄발생원인론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특히 일탈행위와 기회, Albert Cohen의 비행하위 문화이론, 그리고 사회통제이론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지하철의 각종 범죄 양태를 체계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가 전체적으로 갖는 의의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범죄심리학 측면에서의 범죄발생원인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생리학적 범죄발생원인론, 심리학적 범죄발생원인론의 접근, 일탈행위와 기회, 비행하위문화이론, 사회통제이론 등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서울 지하철 범죄 실태 연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지하철 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그 가설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검토한 이론과 대비하여 범죄 검거와 범죄 발생을 시간별, 직업별, 연령 및 성별, 전과별, 요일별, 각 지하철역별, 장소별, 노선별 분석을 연도별 그리고 총괄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 검정하였다.

제V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공적인 가치체계외에 그것과 표리관계에 있는 비행유발적인 잠재적 가치체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현실 모순을 파고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때 나타나는 제반 심리적 요인과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III. 범죄발생원인론의 접근

1. 생리학적 범죄발생원인론

생리학적 범죄이론의 요점은 범죄자는 준법을 지키는 시민과 구분되는 특수한 범죄형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리학적 접근 방법은 범죄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사회계층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적 요건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사회구조적 결핍이 아닌 개인적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생리학적 범죄발생론을 처음 도입한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태리의 외과의사인 Cesare Lombroso(1836-1909)에 의하면 범인은 생리학적 신체 구조에 있어 현대인이 아닌 원시인이나 하등동물에 가까운 진화 과정에서 퇴화된 인간이라는 것이다.²⁾ 따라서 범죄인은 정상인에 비해 원시인으로부터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 범인의 신체 해부에 의한 과학적 연구에 있어 Lombroso는 야만인, 정신이상자들과 비유하여 범인을 선천성 범인(born criminals), Crimination와 Crimean by Passion(격정에 의한 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1) Ian Taylor, Pual Walton and Jack Young, "The New Criminology",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London: Rouflrdge and Kegan, Paul, 1973, p.40.

2) 박병식 · 주희종, 「범죄학」(서울: 법률 출판사, 1996), pp.22-24.

2. 심리학적 범죄발생이론

범죄자는 체질적 특징에 있어 정상적인 국민과는 다르다는 생리학적 이론은 범인은 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이론들로 바뀌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와의 상담을 통한 재소자 인격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 교회 위주의 형사정책은 범인의 정신이상자이거나 심리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인격의 소지자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은 정신박약론, 성격론, 정신병적 인격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³⁾

(1) 정신질환과 범죄

반사회적이고 공격적(aggression), 충동적인 특성을 가진 정신질환적 (psychiatric) 성격은(personality)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적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의 본능적(instinct)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으며 판단력이 약하고 비협조적이며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안전과 안정성 보다는 쾌락과 흥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위에서 말한 충동적 성격 때문에 정신적 질환의 소유자에 의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행해지며 또한 무목적적이다.

정신질환적 인격이 어떻게 하여 살인과 관련되었는가는 어느 특정 개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무의미한 살인을 자행했고, 행위 자체가 충동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사회화가 잘되지 않아 공격적이고 연민의 정이 없다는 사실로 추측하고 있으나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가 피소된 행위 이외는 별다른 독립된 증거는 없다. 피소된 자의 인간적 특성을 그가 범한 행위 자체로부터 추리하고, 이와 같이 추리된 인격에 의하여 범행을 설명하는 순환적인 설명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연구 결과인 정신질환적 인격의 재소자가 21-29세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30세 이후에는 극소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신질환과 범죄

3) Allen Cartner, Colin Greer and Frank Reissman eds., *The New Assault on Equality*, N. Y. Harper and Row, 1973.

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⁴⁾

(2) 정신분석학적 이론

Lombroso는 유전적인 요소에 의하여 인간은 선천적 범죄인과 정상인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분석학적(psychoanalysis) 이론은 신생아는 놓여진 환경에 적응한 사회화과정을 밟아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범법자들은 적절한 사회화과정을 밟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Freud에 의하여 창시된 정신분석 학파는 인간의 성격은 욕구(Id), 자아(ego)와 초자아(super-ego)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본능과 충동으로 수선된 Id는 목전의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회화되지 않았으며 본능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개인을 특징짓는다. 초자아는 사회적 권위 혹은 사회의식을 의미하며 완전히 사회화되고 사회규범과 법칙에 잘 동조해 가고 있는 개인을 가리키고 있다. 자아는 Id의 욕구 충족에 대한 열망과 초자아의 제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⁵⁾

Id와 ego, super-ego의 성격구조(structure of personality)은 사회화된 범인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⁶⁾ 만약 개개인의 사회적 환경이 범행을 관용하고, 지지, 요청한다면 개인은 범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될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⁷⁾ 물론 정신분석학자들은 초자아는 '사회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청이 개인에게 과해지기 때문에, 만약 어느 개인이 준법을 강조하는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범죄를 유발하는 영향력 하에 놓여진다면, 법을 위반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것을 배워서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화 과정은 본능적 충동의 욕구를 무의식(unconsciousness) 속에 본능적 욕구를 억압하고 있으나, 만약 본능이 통제되지 못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4) Husey Cason and M. J. Pescor, "A Statistical Study of 500 Psychopathic Prisoners", *Public Health Report*, 1964, pp. 557-574.

5) 임상곤, C. G. Jung의 심리학 입문(서울: 협성 출판사, 1987), p. 35.

6) August Aichhorn, *Wayward Youth*, N. Y. Viking Press, 1951.

7) Richard L. Jenkins, *Nervous Child 2* (Oct., 1955), pp. 9-11.

3. 사회학적 접근

(1)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 theory)

Chicago 학파에서 창시된 생태학적 이론은 종전의 범죄자와 범죄 현상을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및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을 부정하고 범죄 현상을 특정한 지역사회와 그 지역 공동체를 특징짓는 사회적 요소와의 상관 관계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심리학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1920년대의 Chicago학파의 창시자였던 Robert Park와 Ernest Burgess가 제창한바, 인간사회에도 자연계에 있어서의 생태와 같이 인종과 계층 등의 요소에 의하여 구별되는 다수의 소집단간에 특정한 지역의 점유와 이용을 위해 경쟁이 각 소집단은 해당 집단의 여타 소집단과의 힘의 관계에서의 위치에 대등한 가치를 가진 소지역을 점유케 된다는 사회 생태학(social ecology) 이론에 근거를 둔 생태학적 범죄원인론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의 특정한 범죄율의 증가와 범죄의 집중을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 설명하려 한다.

(2) 일탈행위와 기회(deviance and opportunity)

Richard Cloward와 Lloyd Ohlin¹⁹⁾ 은 Merton의 Anomie이론과 Sutherland의 이질적 접촉이론(theory of different association)을 결충한 이질적 기회 구조론(theory of differential opportunity structure)이라는 새로운 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였다.

Anomie 이론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규정한 성공 목표를 달성하는 합법적 수단을 입수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 구조상 상이한 위치를 점유한 계계층 간의 차이에 착안한 Merton은 성공 목표에 도달하는 비합법적인 방법은 누구나 제한 없이 임의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의 경우와는 달리 계층간에 있어서의 수단의 입수 정도의 차이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⁹⁾ 반면

8) Cifford R. Shaw and Henry,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1969.

9) Robert K. Mert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Theory*, N. Y.

Sutherland의 이질적 접촉론은 비합법적 수단의 기회는 다양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수단의 입수에 있어서는 비교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⁰⁾

4. Albert Cohen의 비행 하위 문화이론 (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Sutherland에게 사사하였으나, 그와 견해를 달리한 Albert Cohen은 Merton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범죄의 원인(ethology)과 사회구조에 따라 상이한 범죄 발생률의 원인 등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나, Merton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규정된 문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간의 단층(불연속)에서 유래하는 사회구조적 긴장 이외에도 비행 원인이 되는 다른 긴장이 비행과 범죄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¹¹⁾ 이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Merton과 Cloward 및 Ohlin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인 범죄 이론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를 지향한 수단과의 연관하에 범행의 원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Cohen은 비행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비행에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비행,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Merton에 비해, Cohen은 사회 계급과 비행, 불법행위 사이에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를 도입하여 사회계층은 가치관의 매개를 통하여 범죄 행위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계층---- 사회가치관----비행. 범행

따라서 범죄자를 준법자로부터 구별하는 요소는 사회계급(계층) 자체가 아니라 사회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관이다.

그의 저서 “비행소년들”(delinquent boys)¹²⁾을 통하여 노동자계층의 하위문화

Free Press, 1959.

10) Edwin Sutherland, "Theory of Different Association."

11) Albert Cohen, "Sociology of Deviant Act: Anomie Theory and Beyo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1965, pp. 5-14.

권 속에서 사회화된 노동자계층의 소년들이 비행문화(delinquent subculture)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소상히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Cohen은 이들의 비행 문화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회가 폐쇄되었다는, 한 특수한 문제에 대한 노동자계층 출신 소년들의 집단적 해결을 시도하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Cohen은 하류계층소년 개개인이 비행소년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신, 비행하위문화의 형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¹³⁾ Cohen은 특수한 사회계층, 즉 노동계층소년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특수한 가치관의 개입을 통하여 쟁싸움이나 재물 파괴와 같은 비행에 유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으로 Cohen의 이론은 하류계층소년의 비행하위문화는 하류계층의 소년들이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의하여 평가될 때 그들이 받는 좌절감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구조론적 이론이다.

5. 사회통제이론

Cohen과 Miller는 비행 하위 문화 및 그 생성과 관련하여 소년 비행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Matza와 Sykes는 소년 비행은 특정한 비행하위문화의 소산이 아니라고 보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제에 동조하는 소년들의 비행은 소년기에 볼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인 '표류상태'의 반영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소년들이 비행을 범하게 되는 데 수반되는 과정을 연구하여, 사회통제가 효과적인 한 비동조적인 행위는 취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한 사회통제이론은 준법할 것이 가르쳐진 사회 성원이 위법행위를 하자면 준법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통제론자들은 사회성원이 범법행위를 할 때에는 준법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자신과 타성원에게 자신이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정당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¹⁴⁾

12) Albert Cohen,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N. Y.: Free Press, 1955.

13) 임상곤, 군중 심리학의 이해, (경찰 대학, 1989), pp. 52-55.

14) David Matza, "Delinquency and Drif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Dec.,1957), pp. 664-627.

소년비행(delinquency)의 원인의 규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행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Matza와 Sykes는, 소년 비행을 인습적인 생활양식과 범죄적인 생활양식 사이를 어느 쪽에서도 강하게 동화함이 없이 표류하는 표류 상태(state of drift)라고 표현하고, 비행소년의 비행에 표류하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지 않은 거의 우연한 그 귀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Matza는 “표류자로서의 비행소년의 개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범행에 종사하는 직업적인 범인이 되는 극소수의 비행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는 비행의 경력을 청산하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비행소년을”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비행 소년의 일생을 통한 인생의 경력이 되는 예는 아주 드물다고 보고 있다.¹⁵⁾

그는 모든 소년비행들은 소년비행에의 파트 타임 참가자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행의 동기는 그들 자신의 존재와 그들의 세계에 확신시키기 위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질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Matza 와 Sykes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년 비행을 촉진하는 요소를 사회 문화의 특성 자체에서 찾고 있다. Matza와 Sykes에 의하면 어느 사회의 문화나 성공을 위하여 근면, 노력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잠재적인 가치로써 흥분된 일을 추구하고, 또한 장려하는 것처럼, 비행소년들은 특수한 비행 하위문화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충실하나, 지배적 가치의 한 단면이며 잠재적 가치인 ‘모험의 추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소년은 일탈자가 아니라 부적합한 상황과 시점에 지배적 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⁶⁾

Matza와 Sykes는 또한 체포된 비행소년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과 수치감을 갖고 있음을, 그들이 전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체제에 반대되는 그들 자신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비행을 저지를 때에는 그들의 행위가 법의 규제에 대상이 된다는 의식을 해소화하는 어떠한 심리적 과정이 있을 것을 가정하여, 이에 관한 개념 도식(conceptual framework)을 개발하였다.

15) Ibid., p. 666.

16) David Matza and Graham Sykes, "Juvenile Delinquency and Subterranean Values", ASR, 26(Oct., 1961), pp. 719-752.

부모와 학교 및 기타 사회의 기강을 통하여 사회의 합법적인 규범에 충분히 노출되었고, 이 규범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비행소년들이 이 규범에 대한 정면공격을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함으로써 비로소 심리적으로 법의 규제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비행소년들은 비록 그들의 행위가 법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며, 동시에 어느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게 된다.¹⁷⁾ 이와 같은 정당화와 합리화는 사회통제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서, 범죄와 비행을 저지름을 가능하게 한다.

6. 난폭한 하위문화 이론

미국의 범죄학자인 Marvin Wolfgang 과 Franco Ferracuti는 그들의 저서 "The Subculture of Violence"에서 사회 규범과 사회 가치에 의한 흉악 범죄 원인의 설명을 시도하였다.

사회지위----사회규범----불법행위

어느 특정한 상황에 적합한 행위에 대한 기대나 규범이 이 규범을 소유한 자들을 난폭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금지를 약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공격을 표면화시킴으로써 흉악한 범죄로 유도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이 규범은 그 근원 자체야 어찌되었던 간에, 실존하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¹⁸⁾ 이 규범은 비교적 영속적이다.

Wolfgang과 Ferracuti는 이 규범의 근원을 역사적으로나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규범들은 특정한 사회계층과 종족 및 인종에 관련된

17) Richard Cloward and Lloyd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 Y.: Free Press, 1960, p. 131.

18) Raymond E. Eve, "A study of the Efficacy and Interaction of Several Theories for Explaining Rebellious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9 (Spring, 1978), pp. 115-125.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범죄의 사회구조적 설명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 사회계급, 인종, 종족, 지역사회나 가족보다는 사회 규범과 가치와 신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

7. Labeling 이론

Labeling의 이론은 어느 특정한 범법행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일탈 행위 전반에 관한 이론으로서, 이를 계기로 일탈행위 연구의 초점은 개인이 비행, 범죄 행위에 개입되는 원인의 규명으로부터, 개인의 행위를 일탈이라고 규정하는 사회과정에 대한 연구로 전환하게 되었다.

시초에 개인이 비행이나 범행을 저지르게 된은 우연적인 요소나, 설명되지 않은 선의의 과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Labeling 이론은 왜 이러한 선의의 과오가 그 과오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그의 일생을 통한 주요한 경력으로 삼는 누범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범인의 측면에서가 아닌 비행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Labeling 이론의 대표적인 제창자인 Howard Becker에 의하면 '사회집단은 그 것의 위반을 일탈로 간주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탈자를 창조하고, 이 규정을 특정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국외자로서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일탈행위는 범인 개인이 취한 행위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법 규와 처벌 행위를 취한 자에게 대하여 적용한 결과이다. 일탈자란 label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자이며, 일탈행위란 사회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낙인, label) 행위이다'.¹⁹⁾

Becker의 정의처럼 Labeling 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의 요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범죄성은 어떤 타입의 행위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자에게 사회에 의하여 주어진 지

19) Howard S. Becker, *Outside*, N. Y.: The Free Press, 1963, p. 9.

위이다.

Becker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예를 인류학자 Malinowsk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Malinowski의 조사에 의하면, 씨족내성관계(clan incest)가 금지된 남태평양의 Trobriand 도에서, 근친상간의 금기를 범했다는 죄책감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는, 씨족내 근친상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를 발견하고 이에 반응하는 씨족사회의 태도이다. 즉 만약 근친상간 행위를 범한 자등에 대한 사회의 공공연한 비난이 따르지 않고, Gossip이 씨족사회 반응이 전부라면, 이 금지를 범한 자들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Niederhoffer가 지적하듯이, 일탈자로 오명을 개인에게 씌우는 과정은 체포, 구금으로 시작되어, 낙인으로서 끝을 맺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어떠한 혐의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일단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 특정한 개인에 대한 일탈행위에 관한 기록이 computer에 영구히 기록됨으로써, 그 개인을 대하는 사법행정 기관의 태도는 이 자료에 의거한 선입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2] 일탈자로서 낙인을 찍는 그 과정 자체가 그 후에 따르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Tannenbaum은 ‘공동체(사회)가 일단 어느 특정한 개인을 일탈자로 낙인을 찍게 되면, 공동체는 그에게 새로 주어진 지위와 더불어 그가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이는 Schur가 말하는 stereotyping(오명 찍기)에 후속되는 소급적 해석(retrospective interpretation)의 과정과 협상(negotiation)의 과정에 해당한다.

[3] Labeling 이론의 마지막 요점은, 두 번째 요점의 결과에 관한 것으로, 일탈행위가 감소되던가, 반복되던가 혹은 광범위한 형태의 행위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인가는 해당초의 행위에 대한 사회집단의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다.

20) Bronislaw Malinowski,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N. Y.: Humanities Press, 1985, pp. 77-80.

8. 결 어

이제까지 우리는 범죄발생원인에 관한 생물, 범죄심리학적 견해와 사회학적 이론을 개관하였다. 전자는 범죄와 비행의 원인을 주로 범인이 사회화를 통하여 학습해야만 할 본능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돌리고 있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범인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여건 (Merton의 사회구조와 anomie 이론, Cloward와 Ohlin의 기회 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Sutherland의 이질적 상호작용론, Cohen과 Miller의 비행하위문화론) 및 사회집단, 사회통제론의 기능에 범죄의 원인을 찾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물, 범죄심리학적 이론은 범행을 고립한 개인의 행위로 보는가 하면,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를 사회의 소산이라고 해서 이두 상반된 견해 간에 단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두 입장은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다를 뿐이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생활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사회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므로, 비록 어떤 범행이 완전한 단독범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과거에 있어서의 사회관계는 그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감정적 반응 경향, 합리화 방법, 습관 그리고 그가 범죄에 사용한 기술 등을 습득,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은 개인의 행위를 독특하게 한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 타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될 여건이 주어질 때,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집단적인 범행을 할 기회의 포착과 범행을 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V.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1. 서울지하철의 치안여건적 배경

1960년 이후 우리 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에 의해 급격한 인구 팽창이 거듭됨에 따라 서울에는 산업 및 인구가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심의 성장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가 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법

및 업무지역으로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주거 지역도 기존 도심의 외곽 및 수도권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따라서 다양해진 주요 지역간의 원활한 연결이 더욱 긴요해졌다. 도로 공간의 부족과 자가 승용차의 급증으로 서울의 교통은 기존 지상 교통망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으로 신속하고 대량 수송 능력을 갖춘 지하철이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 1호선 개통에 이어 5단계의 구간별 개통을 거듭한 끝에 1984년 5월 22일 한강의 남북 지역으로 연결한 순환 2호선을 완전 개통한바, 2호선의 개통은 강북에 위치한 기존 도심과 외곽, 그리고 강남에 새로 형성된 대규모 업무 및 주거 지역을 한번에 연결함으로써 서울의 교통난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축과 수서, 당고개와 남태령을 각각 연결하는 3, 4호선은 1980년 2월 29일 동시에 착공하여 일부 구간은 이미 개통을 하여 1985년 10월 18일 완전 개통되었고, 그후 연장 구간에 대한 건설을 계속하여 1990년 구파발-지축(3호선), 1993년 상계-당고개(4호선), 양재-수서(3호선) 구간이 개통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서울 도심을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3, 4호선의 개통으로 서울의 지하철은 남북부와 도심, 그리고 이를 지역과 시외 지역을 전철로 연결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표 4-1> 지하철 노선별 현황

노선별	구 간	운행거리	역 수
계		172.1km	180개소
1호선	서울역 ~ 청량리	7.8km	9개소
2호선	(순환선) 시 청 ~ 시 청	54.2km	46개소
3호선	구파발 ~ 양 재	26.2km	23개소
4호선	상 계 ~ 사 당	28.3km	24개소

5호선 (일부개통)	왕십리 ~ 마천/방화 ~ 여의도	38km	37개소
7호선(일부개통)	도봉산 ~ 건대입구	17.6km	18개소
국철	(국철연결선) 온수 ~ 서울역 청량리 ~ 의정부	34.3km	23개소

총 2조 4천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된 1. 2. 3. 4호선의 제1기 지하철 공사에 이어 1996년 말에는 5. 7호선의 일부 개통과 함께 5. 6. 7. 8호선의 제2기 지하철 공사가 도시 철도 공사 주관 하에 계속 추진 건설 중에 있다.

2. 지하철 수사대 운영 상황

(1) 연혁

1987년 7월 27일 서울 지방 경찰청 강력과 소속(형사 28명)으로 '지하철 범죄 수사대' 창설되었다. 그러나 1992년 7월 1일 방범부 소속 '지하철 경찰 방범수사대'로 확대 개편 운영되던 중 1995년 3월 10일 현 '지하철 수사대'로 명칭 변경되어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

(2) 인원 및 편제

<표 4-2> 지구대별 현황

지구대별	형사반	출장소
계	8개	23개
1지구대	2개	6개(연신내, 경복궁, 종로3가, 혜화, 노원, 을지로 3가)
2지구대	2개	6개(신림, 서울대, 사당, 고속, 교대, 신천)
3지구대	2개	5개(청량리, 동대문, 운동장, 왕십리, 강동)
4지구대	2개	6개(신촌, 시청, 충무로, 서울역, 신도림, 김포공항)

지하철 수사대는 본대 및 4개 지구대로 편성되어 있고 8개 형사반과 23개 출

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개 출장소당 평균 7개역(8.4Km)을 관할하고 있다. 다음 표2는 지구대별 현황이고 <표 4-3>은, 본대 및 지구대 사무실 위치이며 표4는 인원 편제이다.

<표 4-3> 본대 및 지구대 사무실 위치

부서별	본대	1지구대	2지구대	3지구대	4지구대
위치	한양대역	종로3가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신도림역

<표 4-4> 인원편제

부서별	계	경찰관						의경
		소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계	198	88	1	2	8	47	30	110
본 대	12	7	1			4	2	5
1지구대	50	22		1	2	11	8	28
2지구대	48	21		1	2	9	9	27
3지구대	40	17			2	11	4	23
4지구대	48	21			2	12	7	27

(3) 주요 임무 및 근무 요령

형사반은 반별(1개반 3-4명, 반장 1명, 반원 2-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일제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전동차에 승차하여, 치기배범, 성폭력범 등을 검거에 주력하고, 출장소엔 1일 5인 근무(경찰 1명, 의경 4명)로 역구내 순찰 및 각종 사범 단속, 범죄 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다.

특히 폭탄 및 독가스 테러에 대비 기동대 병력 2개 중대를 매일 지원 받아 불심 검문 검색, 취약 장소 수색 및 방치 물품 점검 등을 통한 대테러 방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지하철 범죄 실태 분석

(1) 검거실적

범죄 검거 실적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0월 31일간에 걸쳐 형사범 및 기소중지자는 총 1,884건에 2,089명을 검거했다.

<표 4-5> 형사범 및 기소중지자

구 분	계	형 사 범							기소 중지
		소계	강도	치기 사범	일반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건 수	1,884	1,214	15	276	746	58	67	52	670
인 원	2,089	1,597	22	314	872	244	69	76	492

(서울지방경찰청)

상위 <표 4-5>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범 및 기소 중지자의 검거는 월 평균 208명을 검거했다. 그리고 경범은 잡상인, 음주 소란, 흡연자 등 총 20,069명(월 평균 2,006명)을 단속하여, 그중 1,495명은 즉시에 회부하고 7,650명은 통고처분을 하였고 10,924명은 지도장을 발부하였다.

(2) 일반적(형사범) 범죄 분석

가. 피의자 전과별 분석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범이 전체 피의자의 74.8%에 해당하나 소매치기범 등 치기사범은 4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피의자 전과자별 분석

(명)

구 분	계	초 범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계 (%)	1,597 (100)	1,196 (74.8)	119 (7.45)	81 (5.0)	66 (4.1)	36 (2.3)	99 (6.2)
강도	22	8	2	2		2	8
치기사범	314	163	28	24	27	14	58
일반절도	872	682	68	43	30	18	31
폭력	244	219	12	7	4		2
성폭력	69	58	4	3	3	1	
기 타	76	66	5	2	2	1	

(서울지방경찰청)

나. 피의자 연령별 분석

피의자 연령 분석은 <표 4-7>과 같고, 14-26세가 전체의 60.2%로 나타나고 있어 21-39세는 전체의 57.5%로 나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7> 피의자 연령별 분석

(명)

구 分	계	14세미만	14~20	21~26	27~32	33~39	40세이상
계	1,597 (100)	10 (0.6)	509 (31.8)	454 (28.4)	249 (15.6)	216 (13.5)	159 (9.9)
강도	22		8	6	5	3	
치기사범	314	6	66	79	53	60	50
일반절도	872	3	355	283	120	83	28
폭력	244		50	53	35	43	63
성폭력	69		3	19	20	20	7
기 타	76	1	27	14	16	7	11

(서울지방경찰청)

다. 피의자의 성별 분석

<표 4-8> 피의자의 성별 분석 (명)

구 분	계	강 도	치시사범	일반절도	폭 力	성폭력	기 타
계 (%)	1,597 (100)	22	314	872	244	69	76
남	1,429 (89.4)	22	279	768	225	69	66
여	168 (10.6)		35	104	19		10

(서울지방경찰청)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절도범의 대다수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검거된 사례들이다. 또한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남성의 범죄가 적극적 범죄 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의자 직업별 분석

일반 절도의 카드 사범 중 학생이 전체의 72%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 사범은 나이 어린 학생에게까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카드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표 4-9>에서 잘 볼 수 있다.

<표 4-9> 피의자 직업별 분석 (명)

구 分	계	공무원	학 生	회사원	상 업	종업원	노 동	군 인	무 직
계	1,597	7	365	277	79	153	131	25	560
강 도	22		6			3	1		12
치기사범	314	2	55	22	13	16	14	2	190
일반절도	872	2	263	141	20	94	63	17	272
폭 力	244	1	27	73	30	23	33	5	52

성폭력	69	2		32	4	8	9		14
기 타	76		14	9	12	9	11	1	20

(서울지방경찰청)

(3) 주요 범죄의 실태

가. 소매치기 등 치기배 극성

1) 검거 현황 (<표 4-10> 참조)

<표 4-10> 검거현황

구 분	계	빼찌기	빼따기	날치기	들치기	안창따기	아리랑치기	굴레따기
건수	276	10	70	7	98	22	69	0
인원	314	10	75	9	108	24	88	0

(서울지방경찰청)

2) 범행 수법

① 빼찌기

소매치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전동차내 및 역구내 승강장에서 면도날을 이용, 피해자의 가방을 찢어 지갑이나 기타의 절취를 하는 수법을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닐 가방 등을 등뒤로 메거나 손에 들고 있더라도 범행 순간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② 빼따기

가방의 단추를 몰래 따거나 자크를 열고 범행을 하는 수법을 말한다. 빼찌기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밀고 밀치는 전동차의 혼잡한 틈을 이용,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범행을 한다.

③ 날치기

역구내 승강장에서 전동차가 열리고 닫히는 틈을 이용, 피해자의 가방 및 손지갑을 가로채 달아나는 수법을 말한다. 범행후 전동차 문이 닫혀 출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쉽게 격리되고, 범인 검거 및 피해자 동시 확보가 매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다.

④ 들치기

전동차 선반 위에 피해자가 가방 등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줄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동차 선반 위에는 많은 물품이 놓여져 있어 범인이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고 가더라도 자기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오인 혹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안창 따기

이 범죄는 주로 남자 승객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는 수법을 말한다. 빽빽기와 같이 미리 준비한 면도칼을 이용하는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범행이라 할 수 있다.

⑥ 아리랑 치기

술에 만취되어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문 등으로 앞을 가리고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 상태를 이용하여 이 범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한다.

술이 덜 취한 경우에는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동료인 양 부추겨 주는 척하며 금품을 절취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걸어 옥신각신하는 사이 다른 공범이 말리는 척하며 금품을 빼앗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골목길 까지 뒤따라가 벽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금품을 강취하는 사례도 있다.

⑦ 쿨레 따기

중년 이상의 여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금목걸이나 금팔찌 등을 차고 있을 경우 동전을 떨어뜨려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져 머리를 숙이거나 할 때, 또는 치마에 껌이 붙어 있다며 일부러 껌을 붙이고 떼어 내는 척하면서 다른 공범이 금목걸이 등을 뺏찌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여름철 노출이 심한 계절에 성행하는 데 3-4명, 때로는 7-8명이 떼를 지어 범행한다. 집단범죄로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생선회칼, 손도끼 등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3) 범죄의 특성

치기배는 그 수법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누범 및 상습범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1996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간의 소매치기 검거자 314명중 전과 5범 이상인 자가 58명이나 되는 것은 바로 상습범 혹은 누범자가 많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주로 단독범보다는 공범 관계를 형성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흥기를 소지하여 집단적으로 대항하기도 한다. 공범들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 ① '기계' :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갑 등을 훔치는 자.
- ② "바람잡이" : 피해자의 전동차 승하차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피해자 앞을 신문지 등을 가려 범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자.
- ③ '옆바람잡이 혹은 뒷바람잡이' : 피해자 옆이나 뒤에서 피해자를 밀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하는 자.
- ④ '안테나' : 경찰관이 미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치기배는 일반 절도범과는 달리 단 한번의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 내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등으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일단 검거가 되더라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해 행위를 하거나 공범들의 지원을 받아 도주 및 증거인멸을 획책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잔인한 흉악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4) 증거 확보상의 문제점

일반적 치기 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은밀한 사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범인을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특히 전동차 내에서는 밀고 밀치는 혼잡한 사이에서, 전동차가 출발하거나 정지 하려는 순간에 범행이 이루어져 전동차를 타고 떠나가는 피해자와 쉽게 격리, 범죄 현장을 멀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확보가 또한 어렵다고 하겠다.

가령 범죄자가 현장에서 발각되더라도 피해품을 혼잡한 전동차 내부 바닥에 버리거나 공범에게 건네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증거를 쉽게 은닉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형사들이 범행 현장을 덮쳐 검거하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지갑을 형사에게 넘겨주고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소매 치기를 했다’며 공범들과 합세하여 뒤집어씌우면서 도주하려 한 실 사례도 있다.

5) 현금지급기의 카드 사범

① 검거현황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0월 31일간에 검거한 일반 절도범 가운데 882명 거의 대부분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카드 사범이다. 서울 지하철 역구내에는 375대의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난 또는 분실된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대단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범죄 여건

최근 들어 신용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 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은행 등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에는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철 현금지급기 앞에는 일체의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치안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이는 카드 회사들이 일반 은행 등의 경우는 은행측과 협조, 무인 카메라 설치가 용이한 반면, 지하철의 375대의 현금지급기 앞에 모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일일이 관리하기도 하기도 어렵고, 전동차 운행이 끝난 심야에는 지하철 역구내 출입이 통제되어 현금지급기 자체가 도난 당할 우려가 없으며, 또한 일반 시민 외에 범죄자들이 현금지급기를 이용,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방관하는 등 각 은행들의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카드를 탈취한 범인들이 지하철 내에 현금지급기를 이용,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유유히 현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가 많다.

소매치기 등 일반 범죄자들도 많은 일반 시민들이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 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카드 비밀 번호로 사용하고 있어 카드 비밀 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를 번호를 이용, 현금을 절취해 가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소매치기 범들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갑 속에서 현금만을 꺼내고 카드 등은 화장실에 버렸다거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습득,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현금지급기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현금을 인출하였다 미수에 그쳐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피의자 중에는 범죄 의식이 희박한 나이 어린 학생이나 여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전과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증이다.

그밖에 어떤 피의자들은, 현금지급기 오작동 및 사용 미숙 등의 허점을 이용, 피해자의 비밀 번호를 알아내 교묘히 현금을 인출 절취해 가는 경우도 있다.

③ 카드 범죄 사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신장 밀매 전문 사기범' 검거를 하였다.

- 피의자 인적 사항 : 주 경환(남 25세, 무직)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968-91, 덕일빌라 302호 거주, 사기 등 전과 3범.

□ 범행 준비

피의자는 1996년 6-7월 영등포 역구내 등 화장실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남의 주민등록증(이 향수, 도 재문 명의) 2매를 습득,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위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영등포 소재 평화은행 양평동 지점과 부천 소재 보람은행에 들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 이향수와 도재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통장과 함께 비밀 번호가 부여된 현금 카드를 발급 받고 또다시 위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과 무선 호출기를 구입한 후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공중 화장실에 핸드폰 번호와 무선 호출기 번호를 적어 놓은 신장매매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였다.

□ 범죄 행각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현금카드를 가지고 이향수, 도재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핸드폰 및 무선 호출기를 통해 연락이 오면, 신장을 파는 대가로 조직 검사를 통해 환자와 75% 이상 수치가 맞을 때에는 2-3천만원, 95% 이상 일치할 경우에는 9천만원 정도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소개비는 그 중에서 10%만을 받을 데니 영등포역 등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한 현혈차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여 사전 혈액원과 병원측 관계자와 짜 놓고 하는 일이니 현혈차에 가서 현혈만 하면 모든 검사가 된다는 식으로 유도한다. 현혈차에 가서 현혈만 하면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비는 우선 57만원 정도 드니까 온라인으로 입금(이향수, 도재문 명의로 개설된 통장)시키고, 3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100만원 정도를 더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환자가 선정되어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하게 되면 소개비 10% 중 나머지 금액을 주면 된다고 교묘히 속여 신뢰를 갖도록 한다. 신장이라도 팔아서 생활하려는 궁핍한 사람을 대상으로 1996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천에 거주

하는 강남원(30세) 등 전국 각지 80여명으로부터 검사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150여회에 걸쳐 무려 1억3천만원을 사취하고,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은행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 역구내 현금지급기에 버젓이 카드를 입력시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통비로 쓰다가 1996년 10월 27일 21시 40분경 지하철 수사대 고속 출장소 근무 의 경이 고속터미널 역구내에서 각종 사범 단속을 근무중 현금지급기에서 다택(200만원)을 인출하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 일체를 밝혀 내 구속 송치한 경우이다.

6) 전동차 내의 성폭력 범죄

① 검거 현황

19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간에 검거한 성폭력범은 69명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검거 인원은 적지만, 신고를 기피하는 등으로 혼잡한 전동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태는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다. <표 4-11>에서 <표 4-19>까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그 분석 내용은, 성폭력 범죄의 총괄, 시간별, 노선별, 장소별, 요일별, 연령 및 성별, 직업별, 피의자의 전과별, 학력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하였다.

<표 4-11> 성추행 범죄 분석(총괄)

(명)

구 분	계	조 치	
		구 속	불구속
'96. 1 ~ 12月	84	64	20
'97. 1. ~ 12月	128	79	49
대 비	+44(52.3)	+15(23.4)	+29(145)

(서울지방경찰청)

<표 4-12> 시간별 분석

(건)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계	135				12	5	6	10	14	67	14	7

(서울지방경찰청)

<표 4-13> 노선별 분석

(건)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국철
계	135	9	21	5	19		1		76	4

(서울지방경찰청)

<표 4-14> 장소별 분석

(건)

구 분	계	전동차	승강장	역구내	기타
계	135	110	3	17	5

(서울지방경찰청)

<표 4-15> 요일별 분석

(건)

구 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 상
계	135	5	24	21	26	21	17	21	

(서울지방경찰청)

<표 4-16> 연령 및 성별 분석

(명)

구 분	계	14세 미만	14-17	18-20	21-23	24-26	27-29	30-32	33-40	40이상	남	여
계	128			8	9	21	12	16	40	22	128	

(서울지방경찰청)

<표 4-17> 직업별 분석

(명)

구분	계	공무원	의사	연구원	교사	학원 강사	청원 경찰	회사원	상업	종업원	공원	노동	무직	외국인	학생
계	84	4	1	1	1	2	1	34	8	8	9	2	11	1	1

(서울지방경찰청)

<표 4-18> 피의자 전과별 분석

(명)

구 분	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계	84	71	5	3	3	1	1

(서울지방경찰청)

<표 4-19> 학력 분석

(명)

구 분	계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	국졸	무학
계	84	1	60	1	18	4		

(서울지방경찰청)

② 적용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되었는바,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전동차내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이 법 제13조의 공중밀집장소 즉,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추행에 해당된다(징역 1년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고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제21조)에 의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③ 범죄 실태

전동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대부분 출퇴근시간 가장 혼잡한 틈을 이용 여자의 엉덩이이나, 가슴 혹은 치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발기된 성기를 문질러 성욕을 채우고, 심지어는 자위행위를 하고 치마 또는 바지에다 사정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승객이 위낙 많아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동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에 저촉,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전동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 행위는 사정을 하는 등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자연적이고 충동적 혹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보고 있다.

피해자인 여성도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 해도 항의해 봤자 창피만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증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많은 승객들은 연령,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동차내에서의 약간의 성추행 행위는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의식이 범죄시하지 않아 상습화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느냐, 너같이 못생긴 여자한테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면박을 주는 파렴치범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④ 범죄 사례

지하철수사대 제4지구대에서는 1996년 10월 30일 전동차내에서 성추행을 한 피의자 김부식(남 27세, 인천시 남구 주안동 390-19호 거주)을 검거,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가 있다.

피의자 김 부식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국종합 건축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6년 10월 30일 07시 50분경 출근시간 혼잡한 틈을 이용, 국철인

역곡역에서 구일역 사이를 운행중인 전동차내에서 피해자인 김상실(여 24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 씹00아, 네 쌩판떼기를 봐라, 어느 미친놈이 너같이 못생긴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많은 승객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억울해 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근무중인 의경과 함께 지구대 사무실로 온 두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한 바, 처음에 피의자는 증거를 대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피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고소장 사실을 추궁하자, 결국에는 범행일체를 시인하여 구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의자는 이러한 일로 구속까지 될 줄 몰랐던 피의자 가족들이 몰려와 '왜 무고한 시민을 잡아넣었느냐, 기자들을 불러오겠다, 서울 경찰청장실에 쳐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춘극이 벌어진 사실이 있다.

(4) 폭발물·독가스 테러 위험성의 문제

가. 테러 가능성의 여부 판단

과거 일본 옴진리교 측의 지하철내 발생한 독가스 살포사건에 이어 최근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타격목표로 한 폭발물 등 테러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잠수함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국내외적으로 왜곡하고 이 사실을 적반하장적으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면서 '백배, 천배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대체로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으로 3. 8선의 부분 침공, 서해 5도 침공, 미사일 공격 등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 행위와 또 다른 하나는 고정 간첩 및 체제의 불만 세력에 의한 주요 시설물 폭파, 요인암살 특히 다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및 철도를 폭파하는 등의 간접적인 후방 교란 행위를 획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직접적인 군사 도발 행위보다는 간접적인 후방 교란 행위의 가능성 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루에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인 560여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국가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가 폭파되면 수천 수만 명의 인명 살상 등의 엄청난 피해는 물론, 그 이후 야기되는 교통 대란 등의 사회적 및 국가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책동은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남한에 체제 불만 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저지른 혁명적 행위라고 선전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연세 대학에서의 한총련 사태를 남한내 혁명 역량의 강화란 측면에서 오편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따른 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정 간첩 등으로 하여금 어느 때를 막론하고 지하철 등에 대한 폭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테러 방호 활동상의 문제점

현재 대중 교통 수단인 지하철과 국가동맥인 철도의 경우 폭발물 등 테러에 대비한 방호책이 미흡한 실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인원은 물론 모든 물품에 대한 사전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일반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및 철도는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 하여도 될 것이다.

현재 지하철 수사대는 매일 2개 중대씩의 기동대 요원을 지원 받아 불심자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화장실, 쓰레기통, 물품 보관소등 취약 개소에 대한 수색을 철저히 하면서 방치 물품 등의 점검을 통해 대테러 방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무리 많은 경찰력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인력만으로는 모든 물품과 인원에 대해 완벽한 검색을 하기란 한계가 있다.

지하철 및 철도의 모든 출입구에서 물품 및 인원에 대한 완벽한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정 간첩 등이 폭발물 가방을 전동차 및 기차 선반 위에 올려놓고 유유히 빠져나와 러시아워에 맞춰 타이머를 작동하여 폭파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 4-20> 연도별 검거실적('95 / '96) 분석

년도	구분	총계	형사범						경범		
			소계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소계	즉심	통고
'95	발생(건)	21567	2028	30	1660	204	29	105	19539	4148	15391
	검거(명)	22235	2696	46	2061	409	29	151	19539	4148	15391
'96	발생(건)	24504	1454	15	1144	165	82	48	23050	1767	21283
	검거(명)	24918	1868	27	1368	292	84	97	23050	1767	21283
대비 (%)	발생	+2937 (13.6)	-574 (28.3)	-15 (50)	-516 (31)	-39 (19.1)	+53 (182.7)	-57 (54.2)	+3511 (17.9)	-2381 (57.4)	+5892 (38.2)
	검거	+2683 (12)	-828 (30.7)	-19 (41.3)	-693 (33.6)	-117 (28.6)	+55 (189.6)	-54 (35.7)	+3511 (17.9)	-2381 (57.4)	+5892 (38.2)

(서울지방경찰청)

<표 4-21> 지하철 범죄 분석 ('95. 1 ~ 12월, 총괄)

구분	계	강도	치기사범	일반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발생건수	2028	30	355	1305	204	29	105
검거건수	2097	35	342	1356	221	29	114
검거인원	2696	46	396	1665	409	29	151

(서울지방경찰청)

<표 4-22> 시간별 분석

(전)

구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계	2028	21	8	49	166	161	139	222	279	239	404	338	2
강도	30	4				3	2	3	5		3	10	
치기사범	355	6		13	37	25	27	26	35	49	48	89	
일반절도	1305	4	5	25	121	114	86	174	210	151	278	137	
폭력	204	5	2	5	4	5	6	7	11	17	52	90	
성폭력	29		1	2	2				4	9	8	3	
기타	105	2		4	2	14	18	12	14	13	15	9	2

(서울지방경찰청)

<표 4-23> 노선별 분석

(건)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국 철	기 타
계	2028	347	1024	192	318	1			146	
강 도	30	5	9	7	8				1	
치기사범	355	47	136	38	63				71	
일반절도	1305	235	739	105	173	1			52	
폭 력	204	30	111	21	37				5	
성 폭력	29	5	5	1	13				5	
기 타	105	25	24	20	24				12	

(서울지방경찰청)

<표 4-24> 장소별 분석

(건)

구 분	계	전동차	승강장	역구내	기타
계	2028	348	75	1596	9
강 도	30	12		18	
치기사범	355	269	32	47	7
일반절도	1305	2		1303	
폭 력	204	26	18	158	2
성 폭력	29	22	3	4	
기 타	105	17	22	66	

(서울지방경찰청)

<표 4-25> 요일별 분석

구 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2028	243	292	276	290	333	312	282
강 도	30	5	6	2	5	7	4	1
치기사범	355	30	48	39	51	51	72	64

일반절도	1305	160	193	193	189	218	198	154
폭력	204	32	27	18	26	35	23	43
성폭력	29	1	2	8	5	4	1	8
기타	105	15	16	16	14	18	14	12

(서울지방경찰청)

<표 4-26> 연령 및 성별 분석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5-17	18-20	21-23	24-26	27-29	30-32	33-40	40세 이상	남	여
계	2696	40	523	517	426	344	243	154	288	161	2523	173
강도	46		8	6	15	4	2	3	5	3	46	
치기사범	396	18	79	50	52	25	40	28	76	28	343	53
일반절도	1665	17	345	402	296	240	137	76	103	49	1568	97
폭력	409	2	63	33	41	62	42	35	76	55	397	12
성폭력	29		1		4	4	5	4	7	4	29	
기타	151	3	27	26	18	9	17	8	21	22	140	11

(서울지방경찰청)

<표 4-27> 직업별 분석

(명)

구분	계	공무원	회사원	상업	종업원	학생	공원	노동	군인	무직
계	2696	7	440	153	284	688	78	106	59	881
강도	46		2		3	6	1	2	2	30
치기사범	396	1	27	11	24	82	9	23	4	215
일반절도	1665	4	241	67	207	511	46	56	37	496
폭력	409	2	148	53	25	59	12	20	12	78
성폭력	29		8	1	5	7	3			5
기타	151		14	21	20	23	7	5	4	57

(서울지방경찰청)

<표 4-28> 전과별 분석 (명)

구 분	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계	2696	2091	200	106	78	59	162
강 도	46	13	6	4	1	6	16
치기사범	396	192	41	30	23	25	85
일반절도	1665	1359	124	58	43	26	55
폭 력	409	379	14	6	8		2
성 폭력	29	25	3	1			
기 타	151	123	12	7	3	2	4

(서울지방경찰청)

<표 4-29> 역별 분석 (건)

구 분	신 도 림	건 대	서 울 역	운 동 장	종로 3가	신 촌	사 당	노 원	청 량 리	서 울 대	동 대 문	신 천	시 청	영 등 포	강 변
건 수	150	104	91	76	70	70	59	54	51	48	45	42	41	39	39

(서울지방경찰청)

<표 4-30> 성추행 범죄 분석(총괄) (명)

구 分	계	조 치	
		구 속	불구속
'95. 1 ~ 12月	29	17	12
'96. 1. ~ 12月	84	64	20
대 비(%)	+55	+47	+8

(서울지방경찰청)

<표 4-31> 시간별 분석

(건)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계	84			3	12			3	14	35	12	5

(서울지방경찰청)

<표 4-32> 노선별 분석

(건)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계	84	5	21	3	21	1			33

(서울지방경찰청)

<표 4-33> 장소별 분석

(건)

구 분	계	전동차	승강장	역구내	기 타
계	84	67	8	9	

(서울지방경찰청)

<표 4-34> 요일별 분석

(건)

구 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 상
계	84	11	9	16	14	10	11	13	

(서울지방경찰청)

<표 4-35> 연령 및 성별 분석

(명)

구 分	계	14세 미만	14-17	18-20	21-23	24-26	27-29	30-32	33-40	40이상	남	여
계	84			4	8	14	12	12	26	8	84	

(서울지방경찰청)

<표 4-36> 직업별 분석 (명)

구분	계	공무원	전도사	연구원	교사	외국인	청원경찰	회사원	상업	종업원	공원	노동	무직	학생	군인	농업	여업
계	128	4	1	2	1	1	1	38	4	11	8	12	26	14	1	1	1

(서울지방경찰청)

<표 4-37> 피의자 전과별 분석 (명)

구 분	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계	128	104	12	9	2	1	

(서울지방경찰청)

<표 4-38> 학력 분석 (명)

구 분	계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	국졸	무학
계	128	1	48	12	48	11	8	

(서울지방경찰청)

<표 4-39> 지하철 범죄 분석 ('96. 1 ~ 12월, 총괄)

구 分	계	강 도	치기사범	일반절도	폭 력	성 폭 력	기 타
발생건수	1454	15	330	814	165	82	48
검거건수	1504	19	298	872	166	82	67
검거인원	1868	27	338	1030	292	84	97

(서울지방경찰청)

<표 4-40> 시간별 분석

(건)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계	1454	23	3	30	201	110	89	174	231	199	202	192	
강 도	15	1		1	4	2	1	1	2	1	1	1	
치기사범	330	7		11	50	18	23	46	59	50	20	46	
일반절도	814	5		12	126	82	53	111	135	104	120	66	
폭 력	165	9	3	2	7	3	7	6	12	9	37	70	
성 폭 력	82			3	12			3	14	33	12	5	
기 타	48	1		1	2	5	5	7	9	2	12	4	

(서울지방경찰청)

<표 4-41> 노선별 분석

(건)

구 分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기 타
계	1454	213	711	69	206	37	1		114	103
강 도	15	1	5		3	1			2	3
치기사범	330	37	118	17	27		1		60	70
일반절도	814	142	442	35	129	29			17	20
폭 력	165	23	101	10	23	3				5
성 폭 력	82	5	20	3	20	1			33	
기 타	48	5	25	4	4	3			2	5

(서울지방경찰청)

<표 4-42> 장소별 분석

(건)

구 分	계	전동차	승강장	역구내	기타
계	1454	243	56	1052	103
강 도	15			12	3
치기사범	330	167	27	66	70

일반절도	814	1	2	791	20
폭력	165	8	17	135	5
성폭력	82	65	8	9	
기타	48	2	2	39	5

(서울지방경찰청)

<표 4-43> 요일별 분석

(건)

구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1454	176	212	181	205	210	240	230
강도	15	1	2	2	1	5	1	3
치기사범	330	31	66	33	42	35	60	63
일반절도	814	112	113	95	119	129	138	108
폭력	165	16	16	27	23	25	22	36
성폭력	82	9	9	15	14	10	12	13
기타	48	7	6	9	6	6	7	7

(서울지방경찰청)

<표 4-44> 연령 및 성별 분석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17	18-20	21-23	24-26	27-29	30-32	33-40	40세 이상	남	여
계	1868	9	289	305	265	279	159	127	245	190	1687	181
강도	27		4	4	3	8	3	2	3		27	
치기사범	338	6	36	42	40	47	28	29	55	55	232	106
일반절도	1030	2	193	212	183	160	86	52	102	40	991	39
폭력	292		35	23	28	36	20	24	53	73	267	25
성폭력	84			3	4	18	12	9	27	1	84	
기타	97	1	21	21	7	10	10	11	5	11	86	11

(서울지방경찰청)

<표 4-45> 직업별 분석 (명)

구 분	계	공무원	회사원	상 업	종업원	학 생	공 원	노 동	군 인	무 직
계	1868	9	330	96	181	432	63	94	25	638
강 도	27				3	7	1	1		15
치기사범	338	2	26	15	21	62	8	9	2	193
일반절도	1030	2	162	30	108	311	28	45	17	327
폭 력	292	1	91	31	27	32	14	29	5	62
성 폭 력	84	3	40	5	9	1	8	2		16
기 타	97	1	11	15	13	19	4	8	1	25

(서울지방경찰청)

<표 4-46> 전과별 분석 (명)

구 分	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계	1868	1429	129	85	70	38	117
강 도	27	12	4	2	1		8
치기사범	338	169	30	27	27	18	67
일반절도	1030	825	72	44	32	19	38
폭 력	292	264	13	7	5		3
성 폭 력	84	71	5	3	3	1	1
기 타	97	88	5	2	2		

(서울지방경찰청)

<표 4-47> 역별 분석 (건)

구 分	신 도 립	청 량 리	서 울 역	운 동 장	사 당	노 원	서 울 대	신 춘	종로 3가	신 립	교 대	왕 십 리	동 대 문	을 지 3가	연 신 내	시 청	건 대
건 수	129	82	76	75	67	65	53	44	44	38	36	35	33	21	20	20	14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하철의 각종 범죄의 경향은 일반적 범죄와 대체로 범죄까지의 다양한 양상의 내용들이 다중범죄로 나타나지고 있다. 다음의 각종 범죄의 분석을 통해 보면 표 20-57은, 1995년에서 1996년도까지의 연도별 검거 실적과 범죄의 추이 분석을 하였다. 검거 실적('95-'96)의 내용을 보면, 형사범은 1일 평균 4건, 그리고 월평균은 121건이 발생하였다. 범죄 발생은 '95년 대비 13.6%가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죄종별로는 절도가 전체 범죄의 78.6%를 점유하고 있고, 절도 중에는 신용카드 범죄가 91.2% 나머지는 치기(소매치기) 사범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사범의 증가는 182.7%로 지하철 수사대의 강력한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갖고 단속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경범의 경우 전 대원의 지속적인 지도로 감소(17.9%) 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서 1997년도의 검거 실적의 분석은 표 48-57과 같다.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범은 1일 평균 5건, 월평균 144건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 발생은 '96년도 대비 35.2%로 증가하고, 폭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증가 추세하고 있다. 죄종별로는 절도가 전체 범죄의 76.9%를 점유하고 있고 절도 중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 범죄가 86%, 나머지는 치기(소매치기) 사범이다.

<표 4-48> 연도별 검거실적('96 / '97, 분석)

년도	구분	총계	형 사 범							경 범		
			소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소계	즉심	통고
'96	발생(건)	24504	1454		15	1144	165	82	48	23050	1767	21283
	검거(명)	24918	1868		27	1368	292	84	97	23050	1767	21283
'97	발생(건)	33140	1732	1	28	1333	134	135	101	31408	2449	28959
	검거(명)	33448	2040	1	48	1486	234	128	143	31408	2449	28959
대비 (%)	발 생	+8636 (35.2)	+278 (19.1)	+1 (100)	+13 (86.6)	+189 (16.5)	-31 (18.7)	+53 (64.6)	+53 (110)	+8358 (36.2)	+682 (38.5)	+7676 (36)
	검 거	+8530 (34.2)	+172 (9.2)	+1 (100)	+21 (77.7)	+118 (8.6)	-58 (19.8)	+44 (52.3)	+46 (47.4)	+8358 (36.2)	+682 (38.5)	+7676 (36)

(서울지방경찰청)

<표 4-49> 지하철 범죄 분석 ('97. 1 ~ 12월, 총괄)

구 분	계	살인	강 도	치기사범	일반절도	폭 력	성폭력	기 타
발생건수	1732	1	28	251	1082	134	135	101
검거건수	1697	1	28	236	1077	133	125	97
검거인원	2040	1	48	258	1228	234	128	143

(서울지방경찰청)

<표 4-50> 시간별 분석

(건)

구 分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계	1732	17	4	16	265	157	112	213	255	280	267	146	
살 인	1				1								
강 도	28	1		1	5	2	1	1	6	4	6	1	
치기사범	251	8	1	1	36	13	3	22	46	40	30	51	
일반절도	1082	4	1	13	205	124	91	152	164	134	170	24	
폭 력	134	2	2	1	4	4	4	8	8	16	37	49	
성 폭력	135				9	4	1	10	14	73	14	9	
기 타	101	2			5	10	12	20	17	13	10	12	

(서울지방경찰청)

<표 4-51> 노선별 분석

(건)

구 分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기 타
계	1732	446	601	150	236	45	13	1	153	87
살 인	1				1					
강 도	28	9	12	1	3				2	1
치기사범	251	59	71	16	25	3	1		17	59
일반절도	1082	309	408	105	149	37	11		54	9
폭 력	134	35	51	15	20	3		1	1	8
성 폭력	135	12	21	5	17		1		75	4
기 타	101	22	38	8	21	2			4	6

(서울지방경찰청)

<표 4-52> 장소별 분석

(건)

구 분	계	전동차	승강장	역구내	기타
계	1732	164	48	1416	104
살 인	1		1		
강 도	28	1		26	1
치기사범	251	53	25	111	62
일반절도	1082		1	1070	11
폭 력	134	1	14	109	10
성 폭 력	135	108	2	19	6
기 타	101	1	5	81	14

(서울지방경찰청)

<표 4-53> 요일별 분석

(건)

구 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1732	243	264	249	255	236	246	239
살 인	1		1					
강 도	28	7	1	4	9	3	2	2
치기사범	251	43	29	36	33	27	31	52
일반절도	1082	152	173	154	150	160	158	135
폭 력	134	17	18	23	23	19	21	13
성 폭 력	135	5	24	21	26	21	17	21
기 타	101	19	18	11	14	6	17	16

(서울지방경찰청)

<표 4-54> 연령 및 성별 분석

(명)

구 分	계	14세 미만	14-17	18-20	21-23	24-26	27-29	30-32	33-40	40세 이상	남	여
계	2040	23	299	350	282	250	203	150	277	206	1938	102

살 인	1						1			1	
강 도	48	2	10	14	5	11	1	4	1	48	
치기사범	258	3	22	32	41	29	24	21	46	40	207
일반절도	1228	8	202	256	191	155	134	84	135	63	1188
폭 력	234	3	33	21	19	23	20	18	38	59	226
성 폭 력	128			8	10	20	12	16	40	22	128
기 타	143	7	32	19	16	12	11	7	17	22	140
											3

(서울지방경찰청)

<표 4-55> 직업별 분석

(명)

구 분	계	공무원	회사원	상 업	종업원	학 생	공 원	노 동	군 인	무 직
계	2040	11	241	88	199	490	66	137	37	771
살 인	1									1
강 도	48			2		14	1	1	1	29
치기사범	258		21	3	13	49	7	10	4	151
일반절도	1228	6	114	43	143	316	34	79	26	467
폭 력	234	1	54	29	19	45	13	28	2	43
성 폭 력	128	4	42	5	11	18	9	12	2	25
기 타	143		10	6	13	48	2	7	2	55

(서울지방경찰청)

<표 4-56> 전과별 분석

(명)

구 分	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계	2040	1582	146	99	64	32	117
살 인	1		1				
강 도	48	20	12	5	4	1	6
치기사범	258	141	17	21	19	9	51
일반절도	1228	949	102	62	38	20	57
폭 력	234	231			1		2

성 폭력	128	104	12	9	2	1	
기 타	143	137	2	2		1	1

(서울지방경찰청)

<표 4-57> 역별 분석

(건)

구 분	신 도 립	청 량 리	운 동 장	동 대 문	서 울 역	사 당	신 립	서 울 대	종 로 3가	왕 십 리	연 신 내	교 대	노 원	충 무로	을 지 3가
전 수	142	133	99	86	78	67	55	54	54	52	49	45	38	35	31

(서울지방경찰청)

특히 성폭력 사범의 증가(64.6%)는 지하철 수사대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갖고 단속한 결과일 것이다.

V. 결 론

1. 지하철 범죄 환경의 개선

가. 범죄의 유발요인 근절

최근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카드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거나, 카드에 필히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으로 카드와 관련한 범죄를 줄이고, 더 나아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카드회사에서는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하철 역구내 현금지급기 앞에 감시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지하철 수사대와 협조 체계를 강구토록 하는 등으로 범죄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민 홍보 활동의 강화

전동차내 성폭력 실태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범죄 예방은 물론 사소한 성추행 행위라도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 신고 및 법질서 의식을 함양케하는 등으로 치안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지하철 노선 확장은 대도시 교통난 해소책일 뿐만 아니라 혼잡도 완화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예방을 통해 경찰에만 모든 것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관장하는 지하철공사 등 책임 부서에서 청원경찰 등의 인력과 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등 범죄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치안 역량의 강화

가. 소매치기 검거를 위한 증거 확보 방안

소매치기는 범행 수법 및 공범관계등 범죄의 특성상 충분한 검거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피습을 당하지 않고 범인들을 제압, 확보하고 쉽게 검거할 수 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고 부인할 것에 대비, 실행의 착수 시기를 정확히 포착하여 현장 체포 위주의 검거 활동에 주력하고 훈련된 요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의자 검거와 동시에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피해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수사 형사들의 역할 분담이 주요하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물론 범행 현장 및 검거 과정에서의 목격자 등 참고인도 현장에서 학보하고 진술을 받아 넣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매치기는 대부분 범행 현장에서 현금만을 꺼내고 지갑, 카드 등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물건을 버리기 때문에 전동차 바닥 등을 살살이 살펴서라도 피해품을 회수해야 한다.(특히 전동차내에서는 승객들의 몸에 가려 지갑을 밑으로 버리는

모습이 안보일 수 있고, 손에 지갑을 들고 있으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운 것이라고 부인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하는 점이다)

피해품이 확보되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켜 주고 핸드백이 열려 있는가 등의 정황을 주지시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피해품을 돌려주면 보복 당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서라도 그대로 돌아가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를 사무실까지 동행하여 진술서를 받고 피해품을 가환부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객을 대상으로 한 아리랑치기와 굴레따기와 같은 집단 조직 범죄는 피습에 대비, 깨스총 등의 장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카메라 등의 채증장비도 갖출 필요가 있다.

나. 지하철 수사대 인력 충원 및 사기 진작책 마련

서울 시내 30개 경찰서중 1개 경찰서의 1/7에 불과한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 88명(의경 110명은 제외)으로 모든 지하철 범죄를 대응하기란 사실상 역부족인 상태라 볼 수 있다.

특히 4개 지구대 형사반 8개반중 2개반은 형사가 2명씩이고 나머지 6개반은 3명씩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으로 모든 지하철 범죄를 수사하고 더 나아가 외근 활동을 통해 소매치기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란 미흡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양질의 범죄 예방활동은 쉽지 아니할 것이다.

더욱이 통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음과 공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96년부터 기동대 유보 부서에서 해제된 관계로 모든 경찰관들이 지하철 수사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치기를 검거할 정도의 전문화된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또한 기존의 경찰관 역시 근무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철 수사대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폭적인 수사 인

력의 확충 및 사기진작책 마련 등의 치안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청 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3. 대테러 방호 체제의 확립

가. 대국민 경각심의 제고

북한의 오편에 의거, 폭발물 등을 설치하여 지하철이 폭파되면 엄청난 재앙이 야기될 것이란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대공 활동의 가일층 강화하여 체제 불만, 불순 세력에 대한 감시 체제를 확립하여 이들의 불순 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적, 물적 위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나. 보안 검색 장비의 설치

폭발물을 사전에 완벽히 탐지해 내고 불순분자를 색출하지 못하면 지하철 폭탄테러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지하철공사 및 철도청으로 하여금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하철과 철도 개찰구마다 공항에서와 같은 보안 검색의 장비를 설치하여 대테러 방호 체제 확립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동기, 한국아동의 도덕성 규인 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 역, 이상심리학 백과사전, 1992.
- 민성길, 죄신 정신의학, 일조각, 1987.
-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보고, 1995.
- 임상곤, 범죄심리학의 이해, 경찰대학, 1995.
- 임상곤, 군중심리학 측면에서의 행동양상에 대한 고찰, 경찰대학, 1989.
- 임상곤, 청년심리학의 이해, 경찰종합학교, 1998.
- 윤가현, 성심리학, 성원사, 1993.
- 윤덕중, 범죄사회학, 박영사, 1984.
- 이봉건, 이상심리학, 성원사, 1989.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81.
- 이현수, 이상행동의 심리학, 대왕사, 1990.
- 정양은, 심리학 통론, 법문사, 1985.
- 장병립, 범죄심리학, 박영사, 1980.
- 장병립, 집단심리학, 박영사, 1980.
- 장병립, 과학수사심리학, 박영사, 1989.
- 최인섭,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992

[외국 문헌]

- Abe I., G., Aggressive Behavior and Sex, Psychiatric Clinical of North America, 1980.
- Albert K. Cohen and James F. Short. Jr., Research in Delinquent Subcultures,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1958.

- Allen Cartner, Colin Greer and Frank Reissman, The New Assault on Equality, N. Y.: Happer and Row, 1973.
- August Aichhorn, Wayward Youth, N. Y.: Viking Press, 1951.
- Ault, R. and Reese, A Psychological Assessment of Crime Peofiling,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1980.
- Bronislaw Malinwski, Cr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N. Y. Humanities Press, 1962.
- Cesare Lombroso, Crime, Its Causes and Remedies, Boston: Little Brown, 1987.
- Cifford R. Shaw and Henry D. McKey, Je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er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 Clarence Schrag,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nalysis of Theory, Harwin Voss, Society, Delinquency and Delinquent Behavior.
- David Matza and Graham Sykes, Juvenile Delinquency and Sutterranean Values, ASR, 1961.
- Edwin M. Lemert, Social Psychology, N. Y., McGraw-Hill, 1986.
- Edwin Schur, Radical Nonintervention: Rethinking the Delinquency Problem, Englewood-Cliffs, N. J.: Prenticee-Hall, 1973.
- Ian Taylor, Paul Walton and Jack Young, The New Criminology: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London, 1973.
- John Dollard, Caste and Class in a Southern Tow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 Marshall B. Clinard and Daniel, J. Abbott, Crime in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N. Y. 1973.
- Marvin E. Wolfgang and Franco Ferracuti,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in Criminology, London, 1967.
- Menachem Amir, Patterns in Forcible Ra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Sheldon Glueck and Elenoar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50.
- Richard L. Jenkings, Adaptive and Maladaptive, Delinquency, Nervous Child, 1986.
- Robert K. Mert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Theory, N. Y.: Free Press, 1969

ABSTRACT

STUDY ON THE REALITIES IN SEOUL SUBWAY CRIMES

Rim, Sang gon

'Defined legally as a violation of law' (Sutherland, E. H.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Chicago, 1939) Crime within the group is essentially and primarily antisocial in that the criminal who is welfare of his group acts instead against it and breaks the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not merely by not doing what these principles prescribe, but by doing something exactly opposites.

Any program set up to attack crime and delinquent behavior at their sources.

A program of this nature needs the constant and comprehensive collaboration of psychiatrists, social works, educations, lawmakers, and public officials, since crime is a social problem and it should be treated as such.

Some crime preventives which should be mentioned are as follows,

(1) The insurance that every child will be decently born and that his home life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adequate; without socially mature parents the chid is handicapped at the start; thus parental education, integrated with the public school system, should be developed now.

(2) A more meaningful educational program which would emphasize ideals of citizenship, moral integrity, and respect for the law and the police.

(3) A periodic check made for potential delinquents throughout the public schools and treatment provided if possible; and if not, proper segregation in institutions.

(4) Careful attention paid to press, movies, and radio so that crime may no

longer appear to be glamorous. This can be done by women's clubs, civic bodies, and other educational groups exerting pressure on the movie syndicates and broadcasting companies to free their productions of the tawdry and lurid characteristics of crime and criminals.

Aggression associated with the phallic stage of development, The child ordinarily comprehends sexual intercourse as an aggressive and sadistic act on the part of the male, and specifically on the part of the penis. Evidence that the penis is fantasied as a weapon of violence and destruction comes from unconscious productions of normal adults.

Limerick, for instance, often refer to the penis as square, or too large, etc., so that intercourse is dangerous and painful for the partner. This may well be a projection of the male's own fear of coitus.

A certain portion of the death-instinct always remains within the person; it is called 'primal sadism' and according to Freud is identical with masochism.

'After the chief part of it(the death instinct) has been directed outwards towards objects, there remains as a residuum within the organism the true erotogenic masochism, which on the one hand becomes a component of the libido and on the other still has the subject itself for an object.'

Criminalism, compulsive-neurotic frequent repetition of criminal acts in a compulsive manner. Like most symptoms of the compulsive-neurotic, such antisocial act are closely rated to feelings of hostility and aggression, often against the father.

Because these acts are symptomatic, they afford only temporary relief and are therefore repeated. One patient with compulsive-neurotic criminalism was apprehended after breaking into a hardware store and stealing money.

He later confessed to many similar incidents over the preceding two years.

At the same time it was apparent that he stole only for the sake of stealing.

He did not need the money he thus obtained and had no special plans for using it.